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§6) 해당없음 창업후(벤처기업 확인 후)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(75, 100)% 감면 \* p.358 공제감면세액 계산 참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(조특법§7) \* 2005.1.1. 이후 최초 개시 사업 연도 분부터 본점기준 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(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) 해당없음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 기 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알뜰주유소 20 도소,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알뜰주유소 20 도소매,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중 기 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 알뜰주유소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알뜰주유소 15 도소매의,료업 5 통관대리 등 7.5 \* 한도) 소기업, 중기업 : 한도1억원(알뜰주유소 제외) - 상시근로자 감소 시 : 한도 1억원-감소인원\*5백만원 \* 알뜰주유소 : ’22-’23년까지 특례적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(조특법§7의4)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\* ’18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-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･ 중견기업에 구매대금 지급한 경우 ⦁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× 0.5% ⦁지급기한 16일∼30일내 지급금액×0.3％ ⦁지급기한31일∼60일내지급금액×0.15％ \* 한도：법인세의 10%